

제목: 쿠팡페이(주)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정 공지

안녕하세요. 쿠팡페이입니다.

쿠팡페이(주)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.

1. **주요 개정내용** : 「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보호 가이드라인」에 따른 선불충전금 관리·운영 및 공시 등에 관한 항목 추가
2. **시행일** : 2021년 4월 19일

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정 신구대조표

개정 전	개정 후
<p>제4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제23조 (정의)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</p> <p>1. '선불전자지급수단'이라 함은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이용되는 쿠팡캐시 등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이용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. 회사가 발행한 각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상세 내용은 인터넷사이트 등의 해당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</p> <p>2. '충전'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, <u>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의 서비스 등(이하 '서비스 등'이라 합니다)에서의 활동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 받는 것을 말합니다.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(신설)</p>	<p>제4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제23조 (정의)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</p> <p>1. '선불전자지급수단'이라 함은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이용되는 쿠팡캐시 등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이용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. 회사가 발행한 각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상세 내용은 인터넷사이트 등의 해당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</p> <p>2. '충전'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<u>유상으로 구매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.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<u>'선불충전금'이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회사에 지급한 금액으로서 유상으로 구매하여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을 말합니다.</u></p>
<p>제25조 (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)</p> <p>① 이용자는 계좌출금, 휴대폰, 신용카드, 무통장입금,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,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<u>적립 받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② 회사가 지정한 지불 수단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 수단별로 지정된 금액으로 충전을 할 수 있으며, 지불 수단에 따라 자체 제한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.</p>	<p>제25조 (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및 적립)</p> <p>① 이용자는 계좌출금, 휴대폰, 신용카드, 무통장입금,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여 <u>충전하거나</u>,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<u>적립,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② 회사가 지정한 지불 수단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 수단별로 지정된 금액으로 충전을 할 수 있으며, 지불 수단에 따라 자체 제한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.</p>

③ 이용자는 본 조에 따른 지불 수단별 충전 정책을 고객센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제26조 (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및 차감)

-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,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.
- ② 이용자는 서비스 등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재화 등의 구매완료 시점에 즉시 차감됩니다.
- ④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등에서 적립 받은 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, 이용자가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순서로 차감합니다.
- ⑤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재화 등의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재화 등 구매 시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재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
제29조 (구매취소 및 환급 등)

- ①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구매 취소가 가능합니다.
- ②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, 다음 각 호에 따라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 - 1. 유상으로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전액 환급합니다. 단, 기프트카드를 구매하여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60% 이상(1만원 이하는 80%이상)을 사용한 경우에 그 잔액을 환급합니다.
 - 2. 상품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전환된 선불전자지급수단 : 환급 대상에서 제외(무상 제공 시에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이 가능함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공지하거나 통지한 경우에는 환급)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,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합니다.

③ 이용자는 본 조에 따른 지불 수단별 충전 및 적립 정책을 고객센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제26조 (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및 차감)

-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,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.
- ② 이용자는 서비스 등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재화 등의 구매완료 시점에 즉시 차감됩니다.
- ④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등에서 적립 받은 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, 이용자가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순서로 차감합니다.
- ⑤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재화 등의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재화 등 구매 시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재충전 또는 재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
제29조 (구매취소 및 환급 등)

- ①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구매 취소가 가능합니다.
- ②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, 다음 각 호에 따라 충전 또는 적립, 제공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 - 1. 유상으로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전액 환급합니다. 단, 회사 또는 제휴사의 기프트카드 등을 구매하여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마지막 충전시점 총 잔액의 60% 이상(1만원 이하는 80%이상)을 사용한 경우에 그 잔액을 환급합니다.
 - 2. 상품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전환된 선불전자지급수단 : 환급 대상에서 제외(무상 제공 시에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이 가능함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공지하거나 통지한 경우에는 환급)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,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

<p>④ 이용자는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, 회사는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.</p>	<p>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합니다.</p> <p>④ 이용자는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, 회사는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.</p>
<p>제31조 (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) (신설)</p>	<p>제31조 (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)</p> <p>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②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, 매 분기말(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)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,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,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(www.coupang.com) 등에 공시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, 지급장소,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.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3.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.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5.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<p>제32조 (선불충전금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) (신설)</p>	<p>제32조 (선불충전금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)</p> <p>① 회사는 선불충전금의 50% 이상을 이용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하거나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② 회사는 선불충전금을 원칙적으로 신탁하되, 불가피한 경우 지급보증의 방식을 혼합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③ 회사가 선불충전금을 신탁하는 경우 대상금액을 전액 신탁하여야 하며, 일부를 지급준비금 용도로 예치할 수 없습니다.</p>

	④ 회사는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선불충전금을 운용하는 경우 안전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.
부칙	부칙
이 약관은 <u>2020년 11월 09일</u> 부터 시행됩니다.	이 약관은 <u>2021년 4월 19일</u> 부터 시행됩니다.

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개정 약관 시행일 전까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경우 본 개정 약관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보아 시행일부터 개정된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.

이번 약관 개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(1577-7011) 또는 help@coupang.com 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